

●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4-128호

「국유재산법」 제74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"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공사" 예정지 내(장미동 49-2, 49-45번지) 방치물(불법적치물)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4년 10월 07일

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

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

1. **공고명** : 항만시설(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49-2, 49-45번지) 내 무단점유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
2. **공고기간** : 2024. 09. 30. ~ 2024. 10. 31.(32일간)
3. **공고사유** : 무단점유물 소유자의 고의적 수취거절, 보관기간 경과반송 등 송달 불가능
4. **공고내용** : 행정대집행 계고서 붙임
 - 무단점유물의 소유자는 행정대집행 계고서(붙임) 내용과 같이 점유물을 철거 및 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이행하지 않을 시 우리 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합니다.
 -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·제5조·제6조에 따르며,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점유물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.
5. **기 타**
 -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청 항만물류과(담당 천세명, 전화 063-441-2257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.

2. 지장물 위치 및 구간별 사진대지 1부. 끝.

■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[별지 제1호서식]

제 2024-002호

행정대집행 고고서

성명(단체명) (유)오성해운 대표 김태철
주소: 전북 군산시 내항 2길 105

2023.8.4.(항만물류과-5005호), 2024.01.31.(항만물류과-825호), 24.02.15.(항만물류과-1155호, 1170호) 등기우편, 2024.02.04.(항만물류과-931호), 2024.02.15.(항만물류과-1170호) 공고, 2024.09.04.(항만물류과-5957, 5959, 5960호) 등기우편, 2024.09.23.(항만물류과-6307) 직접 송달로 귀 하(사) 소유의 아래 적치물(가설건축물 및 폐기물)을 2024년 9월 6일까지 이전·철거 및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, "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공사"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여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어 2024년 10월 31일까지 반드시 이전·철거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고고합니다.

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우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 하(사)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위 고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| 위치 | 대상 또는 종류 | 수량 | 대집행 방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49-2, 49-45번지 | 가설건축물, 지장물, 각종 물품 | 장미동 49-2, 49-45번지 내 지장물 일체 | 철거 및 폐기물처리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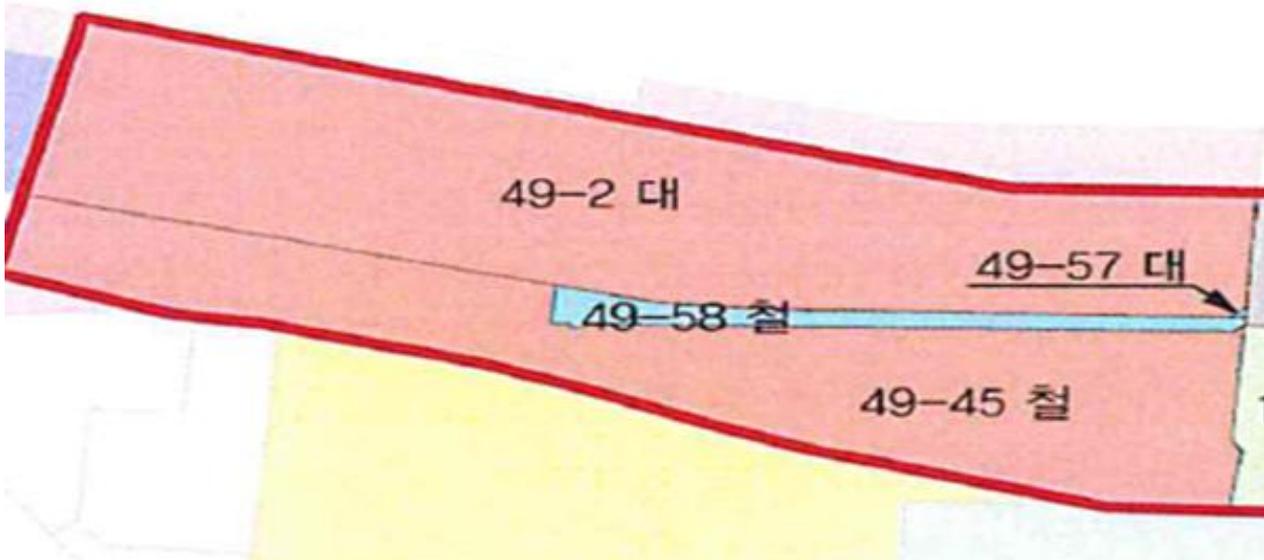
2024년 9월 27일

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

직인



지장물 위치도



공고 대상 지장물 위치도(장미동 49-2, 49-45번지 대상)

구간별 지장물 사진대지(전경)



구간별 지장물 사진대지(전경)



구간별 지장물 사진대지(10번 구간, 점유자 (유)오성해운)

